세무과에서의 안내　　　　　　　　일본에 거주하는 여러분께

① 주민세란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의 수입이 있다면 일본 정부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방 자치체로부터 주민세(도쿄 23구의 경우, 특별 구민세・도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토시마구로부터 특별 구민세・도민세가 과세되는 분(납세의무자)

토시마구로부터 특별 구민세・도민세가 과세되는 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 현재, 토시마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과세된 연도 도중에 토시마구외로 전출한 경우, 또는 일본국외에 출국한 경우에도 1년분의 특별 구민세・도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국외에 주소가 없어진 분도 납세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도민세・구민세의 계산, 납부 방법

과세되는 금액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된 특별 구민세・도민세의 납부 방법으로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가 있습니다. 보통징수란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연간 4회(법정 납부기한 6월말, 8월말, 10월말, 다음해 1월말, 해당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 납부서와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서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융기관 및 편의점에도 이용 가능합니다(단, 액수가 30만엔이하의 납부서에 한합니다).

한편, 특별징수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방법으로 그 해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④ 조세 조약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내용은 다릅니다만, 유학생 등으로 해당 조약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특별 구민세・도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⑤ 납세 증명서, 과세(비과세) 증명서

특별 구민세・도민세의 납세 증명서는 소득금액・세액・납세액을 연도별로 증명 받을수 있습니다(유료). 단, 비과세의 경우, 납세 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과세(비과세)증명서는 소득금액・세액을 연도별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유료). 납세 증명서는 비자 갱신 등에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⑥ 납부하지 않을 경우(벌칙)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독촉장과 재촉장을 송부하며, 그것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무처에의 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조사한 후 급여와 예저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⑦ 납부가 곤란한 경우

생활곤빈의 경우 등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과 정리 제1계에 상담해 주십시오.

＜문 의 처＞ 세무과 과세에 관한 것…03-4566-2354 2355
증명에 관한 것…03-4566-2352
납세에 관한 것…03-4566-2362